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4. 21.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1년 4월 8일

나. 발 의 자: 박미영 의원 외 5명

다. 회부일자: 2021년 4월 12일

라. 상정일자: 제23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1. 4. 19.)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박미영 의원)

가. 제안이유

- 조례의 근거법령인 「측량법」이 폐지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

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개정된 상위 법령명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1조)
- 지명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 (안 제2조)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 법령이 개정된 사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조례」의 연혁을 살펴보면 「측량법」 제58조를 근거로 본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이후 「측량법」이 폐지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2009년 제정되면서 본 조례의 근거규정으로 변경되어 운영되다가 2015.6.4. 법률의 제명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름.
-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 안 제1조(목적)의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례의 근거법률명을 「측량법」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타당한 개정임.
 - 안 제2조(구성)는 지명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으로 제2항에서 부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소관 업무 국장으로 개정하였음. 이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지방지명위원회의 구성) 제3항에서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게 되어있는 바 상위법령에 부합하는

개정임.

- 그 외 띄어쓰기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리한 것으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검토 결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조례」는 2008년 이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에 이번 개정을 통해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의 제명 사항 변경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법적 적합성과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시급하게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향후 집행부에서는 상위법 개정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례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임.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미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27
----------	-----

발의년월일: 2021년 4월 8일

발 의 자: 박미영 의원 외 5명

1. 제안이유

조례의 근거법령인 「측량법」이 폐지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정된 상위 법령명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조)

나. 지명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안 제2조)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안 제2조제1항~제12조)

3. 개정안 :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 2021. 4. 8. ~ 4.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측량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1인을 포함하여 7인이내”를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구청장”을 “소관 업무 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자”를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중전의 제2호) 중 “자 중 3인이상”을 “사람 중 3명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중전의 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구지명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2.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가부동수일”을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일”로 한다.

제6조 중 “동행정담당주사가”를 “동행정팀장이”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관할구역내**”를 “**관할 구역 내**”로, “**지표를**”을 “**지표의**”로, “**일체**”를 “**전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9조 중 “**구·동의 소속공무원**”을 “**관계공무원**”으로, “**등 필요한 협조를**”을 “**등을**”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2조 중 “**15일이내에 시지명위원회**”를 “**15일 이내에 시 지명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측량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지명위원회----- ----- -----.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
②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 ----- ---- 소관 업무 국장--.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각 호의 사람 --- ----- --.
1. (생략) <u><신설></u>	1. (현행과 같음)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3인이상	2.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 ---- 사람 중 3명 이상
④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4. ----- ----- 사람
	④ -----

때에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지명위원을 <u>구지명위원회</u>의 위원으로 위촉하며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 <u>위원회</u>----- ----- -----.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② (생략) ③<u>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u>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u><삭 제></u>
제5조(회의 및 의사)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소집예정일 7일 전까지 <u>당해</u>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u>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u>	제5조(회의 및 의사) ① ----- ----- -----. ----- ----- ----- <u>해당</u> ----- -----. ②----- ----- ----- -----. --. <u><단서 삭제></u>
제6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u>동행정담당주</u>	제6조(간사 및 서기) ----- ----- ----- ----- <u>동행정팀장이</u>

사가 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
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 3. (생략)

제8조(지명의조사) ① 제7조에 의
한 지명의 조사는 구 관할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
한 자연지명, 지표를 지명 등 일
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
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
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이 있는 지명
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
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
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
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③ (생략)

④ 제3항에 의하여 지명을 공동
으로 조사할 경우 상급 지명위
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상급 지명위원회에서도 조사
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

-----.

제7조(기능) ----- 각 호
-----.

1. ~ 3. (현행과 같음)

제8조(지명의조사) ① ----- 따
른 ----- 관할 구역
내-----
----- 지표의 ----- 전
체-----.

② 제1항에 따라 -----

-----.

③ (현행과 같음)

④ ----- 따라 -----

-----.

제9조(의견청취 등) -----

여한 <u>구·동의 소속공무원</u>이나 관련전문가에게 의견의 청취 등 <u>필요한 협조</u>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u>호</u>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u>기타</u> 중요한 사항 제12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결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한 날로부터 <u>15일 이내에</u> 시지명위 <u>원회</u>에 보고하여야 한다.	---- <u>관계공무원</u>----- ----- 등 을 -----. 제11조(회의록) ----- 각 <u>호</u>----- -----. 1. ~ 4. (현행과 같음) 5. <u>그 밖의</u> ----- 제12조(보고) ----- ----- ----- <u>15일 이내에</u> 시 지명위 <u>원회</u>-----.
---	--